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2. 1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2. 19

라. 상정일자 : 2010. 3. 3(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의 보충적 수단으로 도심지역을 공해차량제한 지역(LEZ)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과다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저감 장치를 조기에 부착하도록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중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용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정함.(안 제3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정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 단속 및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 안 제2조(정의) 제1호의 공해차량 제한지역은 안 제3조에서도 서술되므로 조문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조례안 각 조 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상당수의 조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용어가 나열되고 있는 바, 용어의 축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2009. 6. 9일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조항에서는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운행제한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는 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 안 제6조 제1항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토록 규정하였는데,
 - 우선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1년 기준인지 또는 차량이 출고되어 폐차되기 전까지인지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 차량 출고에서 폐차 전까지의 기준이라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된 차량이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한도섭 위원장

- 과태료부과금액 20만원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 박희경 위원

-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므로 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기 바람.

○ 강창규 위원

- 25톤 이상의 차량은 건설장비에 해당되어 동 조례의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김을태 위원

- 화물자동차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댓수와 미부착 사유는?

< 답 변 >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동 조례를 만들었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역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하고 있음.
- 인천시의 화물자동차 7천여대 중 2%에 해당하는 160대 정도가 경제적인 사유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있음.
-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한도섭, 박희경, 강창규, 김을태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 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
- 안 제3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4명)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u>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u>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u>공해차량제한지역</u> 중 인천광역시 <u>공해차량제한지역</u>은 <u>옹진군(영흥면은 제외)</u>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p>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u>공해차량제한지역</u>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 ----- ----- ----- ----- ----- <u>대기관리권역</u> -----.</p> <p>2. ~ 4.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 -- <u>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u> ----- <u>제한지역</u>----- -----.</p>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 ----- <u>제한지역</u> ----- ----- -----</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 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 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 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